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지원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13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지원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7.

다.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지원(안 제8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경기장의 건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조의2(이스포츠 경기장 조성)</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스포츠</u> <u>경기장의 건립·운영을 지원할</u> <u>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u> <u>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u> <u>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u> <u>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u> <u>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및 이

스포츠 분야 사업자에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통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이스포츠 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 제2조제5호²⁾는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8조제3항에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시설 구축 및 기존시설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내용 중 이스포츠시설(경기장) 건립 지원 근거는 현행법 규정(제8조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이스포츠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8조제3항의 이스포츠시설(경기장)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기관이므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 중 비수도권 우선 지원에 대한 내용은 지역 이스포츠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현행 제8조에 별도 항으로 해당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³⁾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8조제3항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되는 이스포츠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

3) 제8조(자금지원 등)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되는 이스포츠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고1

지역 상설 이스포츠경기장 현황

- (근거법령) 이스포츠법 제8조제3항
- (운영현황) 전국 4개소 조성·운영 중, 1개소 구축 중
- (예산)
 - (조성비) 리모델링 30억, 신축 40억(지방비 50%이상 매칭)
 - (운영비) 연 5억('25년, 4개소 기준)

구분 (단위: 억원)	부산 ('20.11.18. 개관)	광주 ('20.12.20. 개관)	대전 ('21.9.15. 개관)	경남(진주) ('24.5.17. 개관)	충남(아산) (건립 중)
주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삼정타워 15~16층	광주 남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첨단과학관 북관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 교 100주년 기념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5-1
규모 (총면적 기준)	2,739㎡ (주경기장 330석, 보조경기장 144석)	4,391㎡ (주경기장 1,005석, 보조경기장 160석)	4,595.7㎡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50석)	약 4,933㎡ (주경기장 700석, 보조경기장 76석)	전용 5,675㎡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100석)
조성비용 (국비 : 지방비)	30 : 30	30 : 30	30 : 40	30 : 50	40 : 295

참고2

지정 이스포츠시설 현황

- (근거법령) 이스포츠법 제8조제4항
- (예산) 별도 예산지원 없음(지정시설 현판제공, 동호인대회 통한 시설 홍보)
- (사업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영업소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 동호인대회 개최 등 활용
- (지정기간/지정현황) 2년 / '25년 전국 40개소*

* 지정 이스포츠시설 현황('25년)

연번	지역	지정번호	상호	주소
1	경기	2024-1호	하이넷 피씨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9번길 41 7층
2	대전	2024-2호	인싸피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57 401-1호
3	충북	2024-3호	샵PC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0 상가동 501호
4	전남	2024-4호	위너피시방 남악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2번길 14 3층
5	대전	2024-5호	PERFECT PC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121번길 45-8 3층
6	경기	2024-6호	M-ZONE PC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2 701호
7	부산	2024-7호	윽티멤존 피시카페서면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2번길 16 2층
8	경기	2024-8호	모던PC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8 403호
9	경북	2024-9호	중앙컴퓨터(애플PC방)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89 3층
10	경기	2024-10호	스타덤PC 반월점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59 3층 301-2 302호
11	전북	2024-11호	스테이 PC방(나운점)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66 2층
12	충북	2024-12호	샵PC클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62-2 2층
13	서울	2024-13호	타워PC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1층
14	서울	2024-14호	윽티멤존PC카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3길 19 지하1층
15	서울	2024-15호	오즈 쓰리팝 피시카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8 지하1층
16	서울	2024-16호	오즈 쓰리팝 PC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3 지하1층
17	서울	2024-17호	오즈피씨카페리저브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지하2층
18	서울	2024-18호	윽티멤존PC카페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8길 29 지하1층
19	서울	2024-19호	오즈PC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341 2층
20	서울	2024-20호	1프로 아레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86 나호 2층
21 ~40	: (생략)			